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9월 16일(월) 조간 (9.15.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9. 11. / (총 9매)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과 장	정 준 섭	전 화	044-202-2530
담 당 자	유 강 열		044-202-2532

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양질의 전문진료 제공 강화를 위한 4대 전문진료 분야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2022)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개정**('19.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등 총 23개소 지정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이번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5)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공지사항(공고) 확인 가능

< 붙임 > 1. 공공전문진료센터 개요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일정 및 평가 기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참고 1 공공전문진료센터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큰 필수의료의 전문 진료 분야별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법적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 **(지정 현황)**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개소수	7	6	5	5
지정 병원	서울대 서울아산 연세세브란스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전북대 충북대 영남대 부산대 강원대 인하대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목포한국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 대구가톨릭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참고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일정 및 평가 기준

□ 추진 방안

○ **(기본방향)** 공공전문진료센터 **3년간**('20.1.1. ~ '22.12.31.) 지정·운영

○ **(지정 대상)**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 **(신청 절차 및 지정)** 해당 의료기관 신청('19.9.16.~10.11.) → 시·도 검토의견('19.10.14.~18.) → 보건복지부 → 지정 통보('19.12월 중)

□ (평가기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안내(2019)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목적과의 부합성(30점)	지역 내 기존 수익성 및 공급 필요성	15
	지역별 주민의 접근성	10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도	5
2. 공공전문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20점)	진료 계획	10
	교육 계획	5
	연구 계획	5
3. 인력·시설·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30점)	시설 계획	10
	장비 계획	10
	인력 계획	10
4.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0점)	권역 내 연계·협력 사업계획	10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10
총 점		100

□ (지정기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별표)

○ **(어린이)**

	구 분	필수 요건	비고
시설 기준	입원 병실	100병상 이상	일반병상, 중환자실, 특수병상(정신, 격리 등) 포함
	소아정신과 입원 병실	-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정신과 병동 내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성인병실과 구분)
	신생아 중환자실	15병상 이상	-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중환자실 내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소아 환자 전용)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소아 응급실	3병상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응급실 내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성인병실과 구분)
	소아 수술실	2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수술부 내에 어린이환자 전용 수술실 설치 가능
	영상의학부	일반촬영실 1실 이상 초음파실 1실 이상	-
	외래 진료	소아청소년과 3실 이상	-
		소아외과 2실 이상	-
		소아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1실 이상	소아담당 전문의 운영
	재활치료실	1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어린이 전용재활치료실 설치 가능(실내로 연결되어야 함)
	수유실, 채혈·채뇨실, 주사실	각 1실 이상	-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시설	각 1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시설 사용 가능

	장비명	일반병동	응급실	검사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장비 기준	소아용 CPR cart (제세동기, 기관내 삽관 장비)	1	1			1	1
	소아용 인공호흡기					2병상당 1	3병상당 1
	주입기 (infusion pump)	3병상당 1	3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이동 X-선 촬영기				1		
	소아용 초음파검사기기			1		이동 초음파기기 1	
	심초음파기기			1			
	소아용 식도위내시경	1					
	소아용 환자감시장치		5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소아용 이동환자감시장	1	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치						
	소아전용 CRRT 혹은 투석기	1					
	미숙아용 미세검체 검사장비			1			

	구분		필요 인력	비고
인력 기준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 분과 중 6개 이상 분과전문의 각 1인 이상 포함 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인 이상(100병상 추가 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 추가)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소아혈액종양, 신생아, 소아감염
		외과	5개 이상의 진료과 각 1인 이상(모병원 협진 가능)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산부인과(미성년)
		소아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담당 전문의 각 1인 이상	-
		진료지원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소아담당 전문의 각 1인 이상	-
	간호사		일반병동 및 신생아중환자실 간호2등급 이상, 소아중환자실 간호1등급	소아전담 간호조직 운영
	약제, 영양		소아전담 인력 배치	-
	행정		소아전담 인력 배치	-
	소아보건 의료정책 연구 및 교육팀		소아전담 인력 배치	-

○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구 분	필수 요건	비 고
시설 기준	입원병실	80병상 이상	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포함
	중환자실	4병상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중환자실 내에 설치 가능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 전용)
	수 술 실	3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수술부 내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 전용)
	외래진료실	각 1실 이상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입원환자용 1실, 외래환자용 1실 이상	수술 후 재활이 가능한 재활시설 설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시설	각 1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시설 사용 가능		
	환자교육실	입원환자용 1실, 외래환자용 1실 이상	입원 병동, 외래진료 공간에 각 1실 이상 설치		
	장 비 명	검사실	방사선실	치료실	수술실
장비 기준	검사용 현미경	1			
	칼라초음파진단기	1			
	근전도 전기진단 검사기	1			
	전산화단층촬영 장치 (모병원 공동활용 가능)		1		
	일반 X-선 촬영기		1		
	골밀도 검사기(BMD)	1			
	체외충격파 치료기			1	
	관절경 장비 세트				1
	C-arm 장치			1	1
	공합식 천공기 및 톱 시스템				1

	구분			필요 인력	비고
인력 기준	통합 진료 센터	전문의	류마티스 내과	2인 이상	-
			정형외과	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 1인 이상	수부, 견주관절, 척추, 고관절, 슬관절, 족부족관절
			재활 의학과	근골격계 재활담당 전문의 1인 이상	-
		간호사		일반병동 간호3등급 이상 교육전문간호사 1인 이상	진료과별 교육 전문간호사 1인 이상 권장
	예방 관리 센터	전문의	예방의학과	1인 이상	센터장(겸직 가능)
		예방관리사업 전담자*		1인 권장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관련 분야 박사급 이상
		전담직원*		1인 이상	간호, 보건, 영양, 통계, 행정 등 5인 이상 권장
		사회복지사		1인 이상	겸직 가능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호흡기)

	구분		필수 요건	비고
시설 기준	입원 병실		80병상 이상	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포함
	중환자실		10병상 이상	준중환자실 설치 가능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설치 가능
	외래진료	호흡기내과, 알레르기 내과	2실 이상	-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1실 이상	
	내시경실		1실 이상	-
	호흡 재활치료실		1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호흡재활치료실 설치 가능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시설		각 1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시설 사용 가능

	장비명	검사실	방사선실	일반병동	중환자실
장비 기준	폐기능검사기	1			
	기관지내시경	2			
	초음파진단장비	1			
	일반 X-선 촬영기		1		
	심전도기				1
	환자감시장치			각 병동 2	
	제세동기			각 병동 1	1
	비강고유량산소공급장치				2
	산소포화도측정기				8

	구분			필요 인력	비고
인력 기준	통합진료센터	전문의	호흡기내과 알레르기내과	3인 이상	-
			흉부외과	1인 이상	겸직 가능
			재활의학과	1인 이상	겸직 가능
			영상의학과	1인 이상	겸직 가능
		간호사		교육전문간호사 1인 이상	진료과별 교육 전문간호사 1인 이상 권장
	예방관리센터	전문의	예방의학과	1인 이상	센터장(겸직 가능)
		예방관리사업 전담자*		1인 권장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관련 분야 박사급 이상
		전담직원*		1인 이상	간호, 보건, 영양, 통계, 행정 등 5인 이상 권장
		사회복지사		1인 이상	겸직 가능

○ (노인)

	구분	필수 요건	비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시설 기준	입원 병실	50병상 이상	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포함			
	외래진료	가정의학과/내과 9개 세부분과 중 1실 이상 운영	소화기,순환기,호흡기,내분비대사,신장, 혈액종양,감염,알레르기,관절류마티스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중 1실 이상 운영	뇌졸중, 치매, 노인정신건강의학 전담 전문의 운영			
	재활치료실	1실 이상	작업, 운동, 언어치료 등 (구분 설치 권장)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시설	각 1실 이상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 된 병원 내 시설 사용 가능			
	장비명	심혈관*	뇌질환	재활	영상의학	
장비 기준	자동혈압계	1				
	심전도계 (이동식 및 24시간 심전도 포함)	1				
	제세동기	1				
	심장초음파(이동식 포함)	1				
	운동부하심전도기	1				
	혈관조영기	1				
	일반 X선 촬영기				1	
	뇌혈류 장비(초음파 포함)		1			
	근전도기		1			
	작업치료장비 (인지 및 언어치료 가능한 장비)			1		
	간섭파치료기			1		
	저주파치료기			1		
	연동 상하지운동기			1		
	직 종		필요 인력		비고	
인력 기준	전문의	내과/가정의학과	9개 세부분과 중 1개 이상 분과 전문의 1인 이상 총 전문의 3인 이상		소화기,순환기,호흡기,내분비대사,신장,혈액종양,감염,알레르기,관절류마티스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3개중 1개 이상 운영 총 전문의 2인 이상		뇌졸중, 치매, 노인정신건강의학	
	간호사		일반병동 간호 3등급 이상		-	
	코디네이터 또는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